

2020년도 운영직(보훈고용명령) 채용 공고문

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과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, 재정경제부문보안관제 및 재정정보분석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.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0년 10월 30일

한국재정정보원장

1. 채용분야 및 규모

직렬	직급	직무분야	채용분야	채용규모
운영직	주임	계		2.5(3)
		행정지원 (보훈 고용 명령)	- 서무, 재무 등(전일제) - 부서 행정지원, 임원수행 등	2(2)
			- 안내, 서무, 재무 등(반일제) - 안내데스크 업무수행, 부서 행정지원 등 - 시간선택제 B형(4hr/일, 오후)	0.5(1)

*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

** 채용분야의 직무기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*** 채용분야별 지원에 유의하여야 하며, 채용분야를 오인하여 지원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
□ 전형방법(요약)

직렬	직급	서류심사		필기시험		면접심사	
		심사방식	선발인원	심사방식	선발인원	심사방식	선발인원
운영직	주임	국가보훈처 추천	추천대상자 전원	온라인 인성검사	응시자 전원	종합역량 면접	1배수 내외

* 각 전형(서류심사, 면접심사 등)단계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적부판단 후 평가하고, 응시자가 합격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 예정배수 이내에서 선발하거나 선발인원이 없을 수 있음

** 인성검사는 서울지방보훈청 추천대상자 확인 후, 온라인으로 실시

*** 보훈고용명령 채용으로, 국가보훈처 추천으로 서류심사를 갈음
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직렬	직급	기준
운영직	주임	-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- 학력, 성별, 연령 등 제한없음 단, 공고일 기준 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 제59조에 따른 정년(만60세)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-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(「병역법」 제76조) - 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보훈청 추천을 받은 자

☐ 임용일('20년 12월 14일 예정)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
- * 합격발표일 현재 재직·재학중 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용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☐ 학력, 성별, 연령* 제한 없음

- *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 제59조에 따른 정년(만60세)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

**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, 임용 확정 이후 학업지속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없음

☐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(「병역법」 제76조)

☐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은 관계법에 따라 가산점 부여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□ 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제1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12.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3. 지원방법

☐ (접수처) 서울지방보훈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수

※ 우리 원 채용홈페이지로 지원할 수 없음

☐ (관련문의)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

4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	비고
입사 지원시 제출 서류	공통	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(지원자 전원) ②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(해당내용을 기재한 지원자) ③ 응시자 서약서(지원자 전원) ④ 친인척 현황조사(지원자 전원) 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관련 확인서(지원자 전원)	서울 지방 보훈청
		※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블라인드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나이·성별·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	
면접 대상자		① 기 제출한 모든 서류(지원자 전원) ② 건강보험득실확인서(지원자 전원) ③ 각 학위 학·석·박사졸업·학력증명서(지원자 전원) *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	원본 서류 면접 시 지참
		※ 블라인드 처리 절대 금지	
최종면접 합격자		① (약식)기본증명서(합격자 전원) ② 신원조사의뢰서(합격자 전원) ③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합격자 전원) ④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(합격자 전원)	원본 서류 별도 안내
		※ 본인의 주민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	

☐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한 서류는 채용 일정 상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의 용도로 활용할 뿐 면접 평가에 일절 반영하지 않음
- 서류제출 시 하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미비·유의사항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에 유의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명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, 기재사실이 증명이 불가능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각 시험단계에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공고시작일 기준 3개월이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, 사실확인 불가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사지원 직전에 신규 발급받을 것을 권장함
 - * 단, 상장 및 자격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고,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인정
- 입사지원시 제출하는 서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학교명·주민번호·성별 등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각 시험단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및 장애인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(카드형태의 증은 불가)만 인정되고, 제출처에 한국재정정보원을 반드시 명시

5. 전형별 일정 및 절차

□ 전형일정

구분	일정	합격자발표
지원서 접수	'20.11. 4.(수) ~ 11.16.(월)	-
서류심사	'20.11.17.(화) ~ 11.25.(수)	'20.11.25.(수)
온라인 인성검사	11.25.(수) ~ 11.30.(월)	개별통보
면접심사	'20.12. 1.(화)	'20.12. 7.(월)
임용예정일	'20.12.14.(월)	

* 코로나-19 확산 및 서울지방보훈청 상황 등에 따라,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(변경 시 응시자에게 안내예정)

□ 전형절차

직렬	직급	서류심사		필기시험		면접심사	
		심사방식	선발인원	심사방식	선발인원	심사방식	선발인원
운영직	주임	국가보훈처 추천	추천대상자 전원	온라인 인성검사	응시자 전원	종합역량 면접	1배수 내외

☐ 서류심사

- (심사방법) 국가보훈처 고용명령에 의한 채용임을 감안하여, 서류심사는 보훈처에 실시하는 응시자 추천으로 같음
- (선발인원) 추천대상자 전원

☐ 필기시험

- (평가방법) 온라인 인성검사
- (선발인원) 응시자 전원

☐ 면접심사

- (평가방법) 종합역량면접
- (선발인원) 1배수 내외

6. 유의사항

- ☐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진행을 위하여 지원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안내사항, 전형절차를 숙지 후 지원하시기 바람
- 시험단계별 합격자의 경우, SMS·e-mail을 통해 개별통지 함
 - 개별 통지되는 공지사항 등을 통보한 후 별도의 수신확인은 하지 않으며, 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 등의 오기로 인하여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
7. 기타사항

☐ 근로조건

- (채용 형태) 정규직
 - 최종합격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를 직원으로 임용
- (근무시간) 주 40시간(8시간/일)
 - * 시간선택제근무자(4시간/일)는 주 20시간 근무이며, 전일제근무자(8시간/일)로 전환 불가

○ (급여 및 복리후생) 한국재정정보원 내부규정에 따름

- * 임용일 기준 만 56세 이상일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음
- ** 각 직급별 급여수준은 면접응시 대상자들에 한하여 개별안내 예정
유선 및 온라인 안내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면접 시 문의
수습임용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, 직무업적급은 지급하지 않음
- *** 연차휴가는 임용 이후 1년 이내의 근무기간 동안은 1개월마다 만근시 1일씩
부여될 예정이며, 1년 이후부터는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

○ (근무지) 본원 등

- 우리 원은 순환업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, 임용 후 기관
의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도 부여받거나 본원 외 다른
지역으로 인사배치 될 수 있음

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」

제18조(수습임용)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직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채용대상자 중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후 면직시킬 수 있다.

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.

④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「보수규정」에 따라 지급하고, 공채시험합격자가 수습으로 임용되기 전에 미리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한국재정정보원 「보수규정」

제8조(직무역할급)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직무역할급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로부터 5년전부터 적용하며, 직무역할급의 조정 범위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한국재정정보원 「보수규정 시행규칙」

제5조(직무업적급의 산정)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인사규정」 제18조에 따른 수습임용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업적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8. 유의사항

- 채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공정·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의 전 단계를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
- 동일 기간 공고·진행중인 채용전형(운영직 채용) 및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, 중복지원 확인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※ 채용분야에 따라 면접 등 전형·평가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하여야 하며, 채용분야를 오인하여 지원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- 최종합격단계 뿐만 아니라 각 시험(서류심사, 면접 등) 단계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예정배수 이내에서 선발하거나 선발된 인원이 없을 수 있음
 - 최종면접 결과 채용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
-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 미사용, 작성방법 미숙지,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, 필수 입력사항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, 기재사실에 대한 서류증빙불가, 사실과 다른 내용기재 및 허위·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채용시험 진행 단계별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 - ※ 임용 이후에도 기재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에 대한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
 - 합격(임용) 후에도 시험부정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거나, 전력 및 비위면직자(신원조사 등) 조회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·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한국재정정보원 「인사규정시행규칙」

제11조(최종합격자 결정)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,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②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□ 과거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“공직자”였던 자로서 동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또는 재직 중 채용비위 연루자에 해당하여, 퇴직일 또는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(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)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

○ 또한,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·알선·청탁 등 채용비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*으로 전형에 임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5년간 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

※ 전형 과정 중 취득하게 된 정보(자기소개서 항목, 시험 문제, 면접 질의, 우리 원 내부정보 등)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

□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직무능력기술서, 기타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등에 지원자의 연령, 성별,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난 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추정이 가능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□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

- 다만, 전자우편·채용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나, 구직자가 한국 재정정보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
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3호 서식]을 작성하여 등기(일반우편은 접수불가) 또는 이메일(kpfis@recruityou.co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

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

9. 기타

- ☐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등은 우리 원 규정에 따름
- 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임용포기확인서(우리 원 양식)를 반드시 제출

10. 코로나-19 관련 안내

- ☐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정부·지자체 행사 운영지침」을 준수하여 면접심사장 운영예정
- ☐ 모든 지원자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함